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입주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공사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 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03.(수요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033** 입니다.(청약자 나이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22.(목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165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O	X	X	X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무순위 사후접수	당첨자발표	당첨자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 정	**4월 08일(월요일)**	**4월 12일(금요일)**	**4월 15일(월요일)**	**4월 19일(금요일)**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당사 분양사무소]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80** 아클라우드감일 1층 1040호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인 하남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2024.03.25.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80.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지상 29층, 5개동, 총 496세대중 2세대**

■ **입주시기 :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후 입주 가능(2024년 4월 예정, 최초 입주개시 2023년06월30일)**

■ **공급대상 :**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민영 주택	2024910033	01	084.8937B	84B	2	105	1403, 2302
	합 계				2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가격 및 납부일정

주택형 (전용면적)	타입 (약식표기)	동-호수	공급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대지비	건축비	소계(A)	계약시	2024.05.24.
084.8937B	84B	105-1403	378,330,820	176,569,180	554,900,000	110,980,000	443,920,000
084.8937B	84B	105-2302	388,830,540	181,469,460	570,300,000	114,060,000	456,240,000

※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대금 중 선납한 금액은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설치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은 기존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승계거부시 계약불가)**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 2023.06.29. 사용검사 완료에 따라 금회 공급주택에 대한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선택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금액

※ 발코니 확장 및 별도품목(유상), 가전옵션(유상)은 아파트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주택은 동-호수별로 기재한 바와 같이 발코니 확장 및 별도품목(유상), 가전옵션(유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해당 동호수에 선택되어 공사한 발코니 확장 및 별도품목(유상), 가전옵션(유상)의 변경, 추가 및 취소 등이 불가합니다. 정확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공동주택 계약일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의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과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0.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

(단위: 원)

타입	동-호수	발코니확장	현관패키지	주방패키지	침실패키지	거실패키지	거실/주방 바닥타일	합 계
84B	105-1403	6,333,100	-	-	-	-	-	6,333,100
84B	105-2302	6,333,100	-	-	-	-	-	6,333,100

② 가전옵션 (단위: 원)

타입	동-호수	시스템에어컨				전기오븐		양문형냉장고		빌트인냉장고		합 계
		일반형		공기청정형		일반형	고급형	일반형	고급형	김치냉장고	콤비냉장고	
		3대	5대	3대	5대							
84B	105-1403	-	-	-	-	-	-	-	-	-	-	-
84B	105-2302	-	-	-	8,400,000	-	-	-	-	-	-	8,400,000

③ 납부금액 (단위: 원)

타입	동-호수	발코니확장 및 별도품목 ①	가전옵션 ②	합 계 ③=①+②	계약금(정액제) 계약시	잔금 2024.05.24.	비고
84B	105-1403	6,333,100	-	6,333,100	3,000,000	3,333,100	
84B	105-2302	6,333,100	8,400,000	14,733,100	3,000,000	11,733,100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04.12 (금) ~ 2024.04.21(일)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무순위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4.12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제출서류

- 당첨자에 대하여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신분증,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3.) 이후 발급분에 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4.04.19.(금요일) 10:00~16: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 고
공통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출입국사실증명원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분양사무소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3.(수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파트 계좌와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좌가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대금 납부계좌

구분	계좌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아파트	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301-0274-2973-11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대금 납부계좌

구분	계좌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금, 잔금	농협은행	301-0277-1628-61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공급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대금별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포기시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분양사무소에서는 현금수납이 불가하며(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대금은 지정된 각각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납부기일 내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분양대금 대출 알선은 없으며, 모든 분양대금은 자납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및 계약 일시는 추후 통보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0.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www.applyhome.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도급 증서로 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접속 구매 및 출력
  (전자수입인지 구매금액)
  - 1천 만원 초과 3천 만원 이하 : 2만원
  - 3천 만원 초과 5천 만원 이하 : 4만원
  - 5천 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인지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 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도급증서'(과세문서 1통마다 납부)로서 과세대상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80. 아클라우드감일 1층 1040호
■ 분양문의 : 1800-0517